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1. 12.(사천시장)
- 회 부 : 2007. 1. 12.(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9호)
- 상 정 : 2007. 1. 23.(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세무과장 정대성)

### 가 제안이유

- 입찰참가수수료 폐지(2006. 1. 10)에 따른 조례의 불합리한 문구 삭제
-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 6. 29일자로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규정내용에 따른 수수료 조정
-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월 1일 시행)으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중 어획물운반업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됨에 따른 수수료 제정 필요
- 소관의 민원서류 명칭 일부 변경, 「공연법 시행규칙」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된 민원 항목삭제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민원 신설 반영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공개수수료의 50%감면 조항의 조례 반영

## 나 주요내용

- 1)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에 따른 불합리한 문구 삭제
- 2)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 <별표 1의 증명중 1.인감에 관한 증명 (1) (2) 삭제>
-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7.지방세에 관한 증명 (1)(2)(3)(4) 요액 조정>
-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10.기타 제증명 (5) 요액 조정>
- 5)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10.기타 제증명 (9) 요액 조정>
- 6) 어획물운반업, 육상양식업,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관련 민원 수수료 신설
  -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39) 신설>
  -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0) 신설>
  - 육상양식업 허가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1) 신설>
  -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2) 신설>
  -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 1건 2,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3) 신설>
- 7) 문화관광과 소관 민원서류의 명칭 변경 및 신설 민원
  -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관계로 명칭 변경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명칭 변경>
  - 공연장 설치허가를 공연장 등록으로 변경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1) 변경〉
- 공연장 증축허가를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으로 변경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2) 변경〉
-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삭제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3)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삭제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4)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삭제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5) 삭제〉
-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9) 신설〉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5,000원
-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10) 신설〉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수수료의 50%감면 〈별표 6 조정〉

#### 다 관계법령

- 「수산업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균호)

-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 사전시 제증명 수수료를 관련 법 규정에 맞도록 조정 및 삭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 「수산업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2,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어
-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간 유사 사무간에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